

사 업	~		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		법 인 명		
연 도					사업자등록번호		

① 각 사업 연도 소득 계산	⑩ 결산서상 당기순손익	01					
	소득조정 금 액	⑩ 이 금 산 입	02				
		⑩ 손 금 산 입	03				
	⑩ 차 가 감 소 득 금 액 (⑩ + ⑩ - ⑩)	04					
	⑩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	05					
	⑩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이 월 액 손금산입	54					
	⑩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(⑩ + ⑩ - ⑩)	06					

② 과 세 표 준 계 산	⑩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(⑩ = ⑩)						
	⑩ 이 월 결 손 금	07					
	⑩ 비 과 세 소 득	08					
	⑩ 소 득 공 제	09					
	⑩ 과 세 표 준 (⑩ - ⑩ - ⑩ - ⑩)	10					
	⑩ 선 박 표 준 이 익	55					

③ 산 출 세 액 계 산	⑩ 과 세 표 준(⑩ + ⑩)	56					
	⑩ 세	11					
	⑩ 산 출 세 액	12					
	⑩ 지 점 유 보 소 득 (「법인세법」 제96조)	13					
	⑩ 세	14					
	⑩ 산 출 세 액	15					
	⑩ 합 계(⑩ + ⑩)	16					

④ 납 부 할 세 액 계 산	⑩ 산 출 세 액(⑩ = ⑩)							
	⑩ 최 저 한 세 적 용 대 상 공 제 감 면 세 액	17						
	⑩ 차 감 세 액	18						
	⑩ 최 저 한 세 적 용 제 외 공 제 감 면 세 액	19						
	⑩ 가 산 세 액	20						
	⑩ 가 감 계(⑩ - ⑩ + ⑩)	21						
	기 납 부 세 액	⑩ 중 간 예 납 세 액	22					
		⑩ 수 시 부 과 세 액	23					
		⑩ 원 천 납 부 세 액	24					
		⑩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	25					
⑩ 소 계 (⑩ + ⑩ + ⑩ + ⑩)		26						
⑩ 신고납부전가산세액	27							
⑩ 합 계(⑩ + ⑩)	28							

	⑩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	29					
	⑩ 차 감 납 부 할 세 액 (⑩ - ⑩ + ⑩)	30					

⑤ 토 지 등 양 도 소 득 에 대 한 법 인 세 계 산	양도 차익	⑩ 등 기 자 산	31						
		⑩ 미 등 기 자 산	32						
	⑤	⑩ 비 과 세 소 득	33						
		⑩ 과 세 표 준 (⑩ + ⑩ - ⑩)	34						
		⑩ 세	35						
		⑩ 산 출 세 액	36						
		⑩ 감 면 세 액	37						
		⑩ 차 감 세 액(⑩ - ⑩)	38						
		⑩ 공 제 세 액	39						
		⑩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(가산세 제외)	58						
		⑩ 가 산 세 액 (동업기업 배분액 포함)	40						
		⑩ 가 감 계(⑩ - ⑩ + ⑩ + ⑩)	41						
		기 납 부 세 액	⑩ 수 시 부 과 세 액	42					
			⑩ () 세 액	43					
			⑩ 계 (⑩ + ⑩)	44					
⑩ 차감납부할세액(⑩ - ⑩)	45								

⑥ 미 환 류 소 득 법 인 세	⑩ 과세대상 미환류소득	59					
	⑩ 세	60					
	⑩ 산 출 세 액	61					
	⑩ 가 산 세 액	62					
	⑩ 이 자 상 당 액	63					
	⑩ 납부할세액(⑩ + ⑩ + ⑩)	64					

⑦ 세 액 계	⑩ 차감납부할 세액 계 (⑩ + ⑩ + ⑩)	46					
	⑩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 세액 공제	57					
	⑩ 분납세액 계산범위액 (⑩ - ⑩ - ⑩ - ⑩ - ⑩ + ⑩)	47					
	⑩ 분 납 할 세 액	48					
	⑩ 차 감 납 부 세 액 (⑩ - ⑩ - ⑩)	49					

작성 방법

- ※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⑩란부터 ⑫란까지, ⑫란, ⑬란 및 ⑭란에 비해운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적고, ⑮ 선택표준이익란에 선택표준이익 산출명세서(별지 제3호서식 부표)의 ⑦ 선택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으며, ⑪ 과세표준란의 금액이 "0" 보다 작은 경우 ⑬ 과세표준란에는 ⑮ 선택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- ※ 「법인세법」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⑬~⑭란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명세서(별지 제3호서식 부표2)의 ⑩양도차익, ⑫금액, ⑬과세소득의 합계를 적습니다.
- ※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(별지 제1호서식)의 ④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'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'으로 '2'로 표기할 경우 ⑩란부터 ⑫란까지의 금액은 기능통화로 표기하지 않고, 기능통화 금액에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③ 과세표준 환산 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. 이 경우 작성방법 1부터 7까지의 각종 조정명세서, 명세서 등 관련 서식에도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③ 과세표준 환산 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.
- * 예: 기능통화(USD), 적용환율(1,100원), 당기순이익(USD 2,000)일 경우 ⑩ 결산서상 당기순이익란은 '2,200,000' 으로 적습니다.
- ⑩ 결산서상 당기순이익란: (포괄)손익계산서의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이익을 적습니다. 다만, 당기순이익은 그대로 적고, 당기순손실은 "△" 등 음(-)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.
 - 소득조정금액란(⑫, ⑬): "소득금액조정합계표(별지 제15호서식)"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② 금액란의 합계와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⑤ 금액란의 합계를 ⑫ 익금산입란 및 ⑬ 손금산입란에 각각 적습니다.
 - ⑭ 기부금 한도초과액란: 기부금조정명세서(별지 제21호서식)의 ② 한도초과액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.
 - ⑮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: "기부금조정명세서(별지 제21호서식)"의 ②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.
 - ⑯ 이월결손금란: "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(갑)[별지 제50호서식(갑)]"의 II. 이월결손금계산서 중 ⑬ 당기공제액란의 합계를 적습니다.
 - ⑰ 비과세소득란: "비과세소득명세서(별지 제6호서식)"의 ⑥ 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란의 합계와 ⑩ 차감비과세 금액란의 ② 합계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. 다만,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(-)인 경우에는 "0"을 적습니다.
 - ⑱ 소득공제란: 소득공제조정명세서(별지 제7호서식)의 ⑬ 합계란의 ⑧ 소득공제액을 적습니다. 다만,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및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(-)인 경우에는 "0"을 적습니다.
 - 세율란(⑪, ⑫, ⑬): 각 세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(⑪란은 「법인세법」 제96조에 따른 과세대상 법인은 「법인세법」 제96조제3항에 따른 세율) 1개만을 적습니다.
 - ⑭ 지점유보소득란: 「법인세법」 제96조를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(별지 제49호서식) ⑮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 - ⑯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: "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(갑)[별지 제8호서식(갑)]"의 ⑮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 - ⑰ 차감세액란: ⑯란의 산출세액에서 ⑯란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.
 - ⑱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: "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(갑)[별지 제8호서식(갑)]"의 ⑮란을 적습니다.
 - ⑲ 중간예납세액: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조의4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정산할 때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결산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특례 정산서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호의6서식)의 ⑩중간예납세액 재정산란의 금액을 적습니다.
 - ⑳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: "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(을)[별지 제8호서식(을)]"의 ⑮ 추가납부세액 합계금액과 ⑯ 이월과세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.
 - 가산세액란(㉑, ㉒): "가산세액계산서(별지 제9호서식)"에 따라 적습니다(중간에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).
 - 기납부세액 계란(㉓, ㉔)
 - 가. 기한 내 납부세액은 중간예납(중간에납을 고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), 수시부과 및 원천납부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고,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은 "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계산서(별지 제11호서식)"의 ⑧ 공제(환급)신청금액을 적습니다.
 - 나. 신고납부 전 가산세액은 중간예납 미납부가산세 등을 말합니다.
 - ㉕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: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('산출세액'에서 '공제감면세액'을 차감한 후의 세액(가산세는 제외함)을 적습니다.
 - ㉖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: "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(별지 제52호의4서식)"의 ⑨란의 연도별 공제금액을 적습니다.
 - ㉗ 과세대상 미환류소득란: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(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14호서식)의 ㉕금액(음수인 경우 '0')을 적습니다. 다만, 2017.1.1.부터 2017.12.31.까지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이 발생한 사업자는 ㉕금액에 종전의 「법인세법」(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(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52호의2서식)의 ㉕금액(음수인 경우 '0')을 합산하여 적습니다.
 - ㉘ 가산세액란: 가산세액계산서(별지 제9호서식)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분의 ㉖가산세액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.
 - ㉙ 이자상당액란: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0조의3제2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종전의 「법인세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93조제20항에 따른 금액[종전의 「법인세법」(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) 제56조제8항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]를 합산하여 적습니다.

작성 방법

1. ①선박명란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이 소유하거나 용선한 선박 명을 기입합니다.
2. ②선박순톤수란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4조의7제3항제2호에 따른 순톤수를 기입합니다.
3. ④운항일수란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4조의7제3항제3호에 따른 운항일수를 기입합니다.
4. ⑤사용률란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04조의7제3항제4호에 따른 사용률을 기입합니다.
5. ⑥개별선박표준이익란에는 ②선박순톤수란에 기재된 톤수에 구간별로 ③1톤당1운항일이익을 곱한 금액에 ④란에 기재된 일수와 ⑤란에 기재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입합니다.
6. ⑦선박표준이익란에는 ⑥개별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의 합계를 기입합니다.

작성 방법

1. ②구분란에는 「법인세법」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"토지",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"건물",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「소득세법」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"기타"로 적습니다.
2. ⑪유형란에는 「법인세법」 제55조의2제4항에 따른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파산,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92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할·통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"농지"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 등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92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은 "기타"로 적습니다.
3. ⑭세율란에는 「법인세법」 제55조의2제1항각호에 따라 해당 자산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습니다.
예시) 미등기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: 40(「법인세법」 제55조의2제1항제3호)